

인천세관, 수입신고 시 필수신고사항 확인 및 신고 철저 안내

수입신고 시 관세법에 의거하여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하나, 적정하지 않게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 시 필수신고사항 확인 및 신고 철저 요망에 관한 내용을 안내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수입신고 시 필수신고사항 안내 및 신고 철저 안내

-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예: 고춧가루→고추씨가루), 수량(중량)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관세법」 또는 「상표법」 등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신고(등록)된 상표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습니다.
- 필수신고사항 중 특히 품명 ·규격 ·수량(중량) ·가격 및 상표 등 필수신고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하고, 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제도 등을 이용하여 확인 후 신고 필요합니다.
- 인천세관은 수입신고서에 대한 심사 및 물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필수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 한 화주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또는 제276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제도 안내

- 근거 법령 : 「관세법」 제246조 제3항
- 신청 시기 : 수입신고 전
- 확인 사항 : 수입 물품 원산지, 수량, 품명 등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거한 수입신고를 위한 제반 사항
-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 후에 확인 전 인지된 수입 물품 정보와 비교하여 상이한 오류 등 발생 시 수입 제반 서류 재확인이 필요하며 원산지 표시 등의 오류인 경우 「관세법」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문의처

○ 인천세관 통관검사2과 ☎032-452-3249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인천세관] 수입신고 시 필수신고사항 확인 및 신고 철저

[붙임2]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18)

| Contact



김성근 관세사

T 070-4353-5152
E skkim2@esein.co.kr



이재훈 관세사

T 070-4353-1553
E jhlee2@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